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57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김기웅
김상훈 · 진종오 · 구자근
강선영 · 이성권 · 김기현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온누리상

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14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u>제26조의1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 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 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 물을 판매하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은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u> <u>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 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u>